

2026년도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 공고

2026년도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19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1. 자격시험 합격자

- **합격자 명단** :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별도 안내
- 동물보건사 자격관리시스템(www.vt-exam.or.kr)의 ‘합격자 확인’ 메뉴에서 확인 가능(공고일로부터 3.4일까지)

2. 합격자 제출서류(필수)

- **제출기간** : 2026. 2. 19.(목) 10:00 ~ 3. 4.(수) 18:00
*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(토요일, 공휴일 포함)
- **제출방법** : 동물보건사 자격관리시스템(www.vt-exam.or.kr)
○ ‘동물보건사 자격관리시스템’ 접속 후 로그인 → 메인 화면의 메뉴에서 ‘나의 시험정보/나의 응시결과’ → 관련 서류 업로드

□ 공통 서류 ※ ①, ② 서류 모두 제출

- ① 「수의사법」 제5조제1호 본문*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(제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*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
- ② 「수의사법」 제5조제3호 본문*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(제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* 마약, 대마(大麻),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(向精神性醫藥品) 중독자

□ **개별 서류** ※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1. 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

-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“졸업(예정)증명서”
* 졸업예정증명서의 졸업예정일은 ’26.8.8일 이전이어야 함(동물보건사 자격 시험 시행일인 ’26.2.8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2. 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제16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

-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“입학증명서”, “졸업(예정)증명서”,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([붙임1] 자료 참고)을 이수한 “성적증명서”
* 졸업예정증명서의 졸업예정일은 ’26.8.8일 이전이어야 함(동물보건사 자격 시험 시행일인 ’26.2.8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3. 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

- ①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(동물간호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)
③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

4. 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

- ①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이나 자격증
②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*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 서류는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(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) 또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(대사관 또는 영사관)의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·공증하여 제출
**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음

5.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해당자

-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([붙임2] 자료 참고)을 이수^{*}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
*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4개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'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' 중 임상 관련 교과목(예방 및 임상 동물보건학에 속하는 교과목)을 10학점 이상 포함하여 총 20학점 이상
- ②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(120시간)
※ '26.2.7.(토) 24:00까지 평가인증 교육기관에서 "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"를 발급받아야 인정

6.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 해당자

-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졸업증명서*
* 졸업이 아닌 학위(전문학사 이상) 취득자는 학위 취득 증명서 제출
- 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(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에 관한 업무 1년 이상 종사)*
* (종사기간 인정)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'21.8.28일까지를 종사 기간으로 인정
※ 「동물병원 종사증명서」 서식은 '동물보건사 자격관리시스템'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
- ③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
- 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(120시간)
※ '26.2.7.(토) 24:00까지 평가인증 교육기관에서 "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"를 발급받아야 인정

7.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호 해당자

-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
- 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(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에 관한 업무 3년 이상 종사)
* (종사기간 인정)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'21.8.28일까지를 종사기간으로 인정

- ※ 「동물병원 종사증명서」 서식은 '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'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
- ③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
- 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(120시간)
※ '26.2.7.(토) 24:00까지 평가인증 교육기관에서 "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"를 발급받아야 인정

3.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

- 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내 '동물보건사 자격관리시스템'에 공통 및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(업로드)하지 않을 경우, 당해 시험 합격이 취소되며,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수의사법 제16조의6(준용규정)에서 준용하는 제5조(결격사유), 제9조의2(수험자의 부정행위)를 확인하여 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 - 자격증 발급 이후에도 결격사유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증 발급을 취소하거나, 그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.
 -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 및 시스템(www.vt-exam.or.kr) 등 문의사항은 대한수의사회(☎ 031-702-8686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